

2026년 독립기념관 개방형직위(사무처장) 채용 서류전형 가이드라인

우리관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, 지원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입사지원서에 대하여 추가 블라인드 처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, 지원자는 본 서류전형 가이드라인에 따라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여, 블라인드 채용 기준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I

입사지원서 기재 시 유의사항

- ◆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의 착오·누락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
- ◆ 채용사이트 장시간 접속 시 작성내용 미저장 등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은 사전 작성 후 웹화면에 복사입력 요망
- ◆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은 입사지원서 제출 전 개인 컴퓨터에 별도 저장 요망
- ◆ 입사지원서 제출 후 기재사항 수정 불가

1. 작성 기본원칙

가. (성명) 입사지원서 내 성명란, 개명정보 작성란 외 전 항목에 성명 기재 금지

나. (학교) 입사지원서 전 항목에 학교명 기재 금지

※ 학교명 유추가능한 정보(학교 도메인 이메일 주소, 학교명이 포함된 학술지명, 교원자격증 자격번호 등) 기재 금지

☞ 필수기재항목에 학교명이 포함된 경우, 학교명 전체를 비식별화하여 기재

예: 독립대 학교 → 독O대 학교(X), OO대 학교(O)

독립대 학교 학술지 '독립사학' → 독O사학(X), OO사학(O)

독립대 학교 발급 교원자격증 '독립대 제0000호' → 독O대 제0000호(X), OO대 제0000호(O)

2. 경력·경험사항 작성 유의사항 ※ 지원 직무와 관련된 사항만 평가(인정)

가. 분류기준

구분 기재방법	금전적 보상 有 경력사항으로 기재	금전적 보상 無 경험사항으로 기재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

나. (경력) 경력사항에 기관(회사)명은 기재가능하나, 해당기관이 학교인 경우

학교명 기재 금지

※ 예: 한국대학교 부설연구소(X) → OO대학교 부설연구소(O)

독립기념관(O)

다. (경험) 동아리·학술연구·프로젝트 등에 직·간접적 학교명 기재 금지

※ 예: HKU OO동아리(X) → 동아리(O), OO동아리(O), ~관련 동아리(O)

3.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유의사항

가. (공통) 블라인드 채용 기준 준수 ※ II-2-가. 블라인드 채용 준수 여부 참조

나. (예외) 논문 언급(내용, 과정)은 가능하나, 인적사항·학교명 기재 금지

II

서류전형 적합여부 검토 기준 및 예시

1. 서류전형 적합여부 검토항목

구분	①	②	③
항목	블라인드 채용 준수 여부	작성 내용의 성실 여부	응시자격 적합 여부

※ 3개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한 경우 불합격 처리

2. 검토항목별 처리 기준 및 예시

가. 블라인드 채용 준수 여부 : 성별·신앙·연령·신체조건·학력·학교·혼인·임신·가족관계·출신지역 등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

항목	기준 및 예시
성별	· 성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- 예: 언니, 오빠, 형, 누나, 군경력(사병), 남편, 아내 등 기재
신앙	· 종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 (종교활동 등)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- 예: 교회 수련회, 여름성경캠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였으며~
연령	· 생년월일, 연령 등을 직·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- 예: 독립기념관이 개관하던 해에 태어나~
신체조건	· 신장, 체중, 용모에 대한 내용 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- 예: 188cm의 큰 키로~
학력·학교	· 학력·출신학교 를 직·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- 예: 대학교 졸업 시 한국대학교 총장상을 수상하였고~ - 예: 교원자격증 자격번호 작성 시 학교명 기재 - 예: 이메일 주소 기재란에 학교도메인 메일주소 사용
혼인·임신	· 결혼여부, 자녀유무, 임신여부 등에 대한 내용 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- 예: 육아휴직을 통해 아내와 육아를 분담하며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였으며~
가족관계	· 가족의 직업, 출신지역 등 가족사항에 대한 내용 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- 예: 어렸을 때부터 독립기념관에 근무하셨던 부모님과 함께 독립기념관에 자주 방문하여~
출신지역	· 출신지역에 대한 내용 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- 예: 천안지역 토박이로서 독립기념관을 평생직장으로~

나. 작성 내용의 성실 여부 :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

○ (분량) 자기소개서·직무수행계획서 미작성 또는 10% 미만 작성한 경우

※ 자기소개서 미작성 또는 200자 미만 작성, 직무수행계획서 미작성 또는 500자 미만 작성

○ (표절) 타인의 작성내용과 동일한 경우

○ (기타) 타 기관 제출용으로 작성, 기관명 오류, 특정 문자·기호의 반복 등

다. 응시자격 적합 여부 :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

○ (결격해당) 채용공고 상의 결격사항에 해당하는 경우

- 독립기념관 인사규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-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
- 우리관 재직자

○ (요건미흡) 공고의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
- 기본요건, 직무 관련 세부 자격요건 인정여부는 심사위원회 합의로 결정

○ 독립기념관 인사규정 제8조

제8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.

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2. 「병역법」 제7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3. 채용비리로 인한 부정합격자 및 다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4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

○ 국가공무원법 제33조

제33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○ 병역법 제76조제1항

제76조(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) ①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,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.

1. 병역판정검사,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
2. 징집·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
3.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

○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

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